

제7장 무역구제

제1절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1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2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의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0년 간의 기간을 말한다.

제7.2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제7.3조

조사 절차

1.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한쪽 당사국은 제1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그 조사로부터 얻는 정보를 검토하고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3. 제1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 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그 개시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제7.4조 조건 및 제한

1. 어떠한 당사국도
-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한도와 기간을 제외하고
- 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제7.3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 또는
- 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3. 당사국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7.5조

잠정조치

1. 자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그 조치의 적용 후 협의를 개시한다.

3.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그 당사국은 제7.3조제1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7.2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4조제1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7.6조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

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4. 모든 보상은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총 적용기간을 기초로 한다.

제7.7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제2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7.8조

일반규정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양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 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와 무관하게,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양 당사국은 WTO 협정 이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 간 반덤핑 또는 상계조치 사안에 대하여 다음의 관행을 준수한다.
 - 가. 반덤핑 협정 제2.4조제2항의 가중평균 가격비교, 개별거래 가격비교, 또는 가중평균-개별거래 가격비교 중 어느 것이든, 반덤핑 협정 제2조, 제9.3조, 제9.5조 및 제11조에 따라 덤플 마진을 산정, 평가, 또는 검토하는 경우, 모든 개별 마진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 나. 조사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의 질의서에 대한 적시의 답변을 요청한다. 조사 당사국이 마감시한 전에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받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정보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조사의 목적상 명확화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 당사국은 누락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관한 정보의 명확화를 요청한다. 이 절차는 조사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상의 마감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제7.9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합치되게, 그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관한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그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7.10조

분쟁해결 조항의 적용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와 제7.7조제2항을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16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와 제7.7조제2항의 경우, 당사국은 제16장(분쟁해결)의 제16.5조(협의), 제16.6조(공동위원회 회부) 및 제16.7조(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이용할 수 있다.